2016년 상반기 7호

제6대 양산시의회 소식지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

양산시의회

YANGSAN CITY COUNCIL

소통하는 열린의정 !
역동적인 희망의회 !

본격적인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양산시의회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양산, 내일이 기다려지는 희망도시 양산.
양산시의회는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시민에게 약속한 많은 일들을 하나 둘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실천으로
양산시의회는 시민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더 큰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글 싣는 순서

2016 상반기
양산시의회 소식지 **소통 7 호**

신년사 / 04
제6대 양산시의회 의원 / 05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 06
의원의 임무 및 역할 / 07
2015년 후반기 의정활동 결산 / 09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 1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 1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 13
의원발의 조례 / 14
언론에 비친 양산시의회 / 17
2015년도 후반기 의안심사 결과
– 제140회 임시회 / 18
– 제141회 정례회 / 24
5분 자유발언 / 45
시정질문 / 64
건의안 및 결의안 / 67
의정활동 이모저모 / 68
의회 청사배치도 / 70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꽃 가꾸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양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새해를 맞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항상 건강한 생활 속에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을미년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양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시 승격 19년 만에 경남에서 네 번째로 30만 명을 돌파하며 동부 경남의 중견 자족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재정규모 또한 1996년 시 승격 당시 1천억 규모에서 이제 1조원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큰 발전과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6년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시 산업 구조에서 관내 2천여 업체에서 종사하는 5만여 명의 종업원들은 경제위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통해 힘을 합쳐 극복하며 더 나아가 인구 30만 시대를 넘어 40만, 50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양산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2016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사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1991년 제1대 양산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25년의 세월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권익 대변에 앞장서 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꽃을 가꿔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제6대 양산시의회는 처음의 마음 그대로 3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이 행복한 양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고귀한 색으로 열정과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였고 원숭이는 적응력이 뛰어나며 재주많은 동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30만 시민 여러분 모두 붉은 원숭이 같은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재기로 양산시의회와 함께 올 한 해 힘차게 열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년 1 월

양산시의회 의장 한옥문

의장단

Chairman & Vice chairman

의장 한 옥 문
(중앙 · 삼성)

부의장 정 경 효
(상북 · 하북)

제 6대 양산시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Counsil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박일배
(평산 · 덕계)

부위원장 이종희
(상북 · 하북)

위원 김정희
(중앙 · 삼성)

위원 이기준
(동면 · 양주)

위원 차예경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Planning & Administrative Committee

위원장 김효진
(물금 · 원동 · 강서)

부위원장 김정희
(중앙 · 삼성)

위원 박일배
(평산 · 덕계)

위원 이종희
(상북 · 하북)

위원 이상걸
(동면 · 양주)

위원 이기준
(동면 · 양주)

위원 박대조
(서창 · 소주)

위원 이정애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City & Construction Committee

위원장 이상정
(평산 · 덕계)

부위원장 이호근
(동면 · 양주)

위원 이채화
(서창 · 소주)

위원 정경효
(상북 · 하북)

위원 임정섭
(물금 · 원동 · 강서)

위원 차예경
(비례대표)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 · 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의 임무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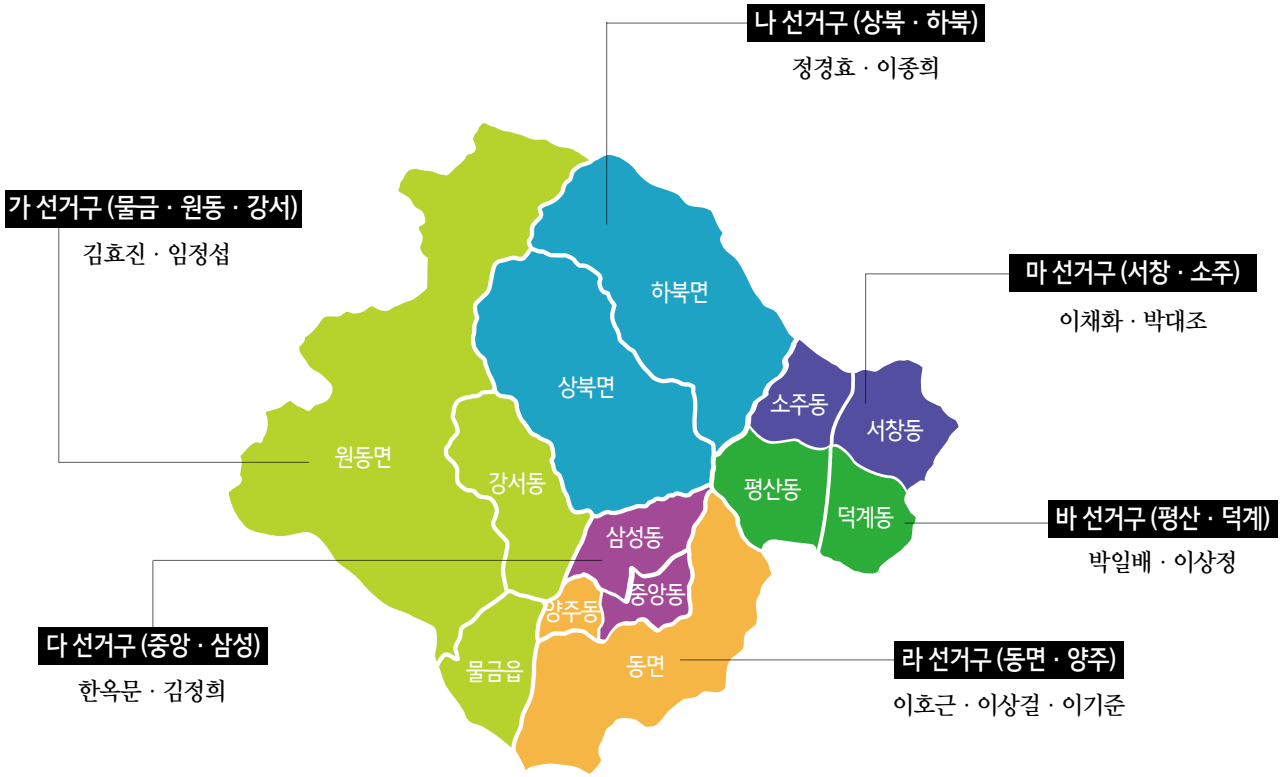

의원의 임무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역할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며,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 · 처리하며,
- 조직운영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30만 양산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 주력

22일간 개회, 조례안 및 추가 경정예산안 등 안건 84건 처리
현장확인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양산시의회는 2015년 하반기 동안 총 22일간 개회하여 8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양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회기운영 현황으로는 2015년 8월 17일 제1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1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까지 임시회 5일, 정례회 17일 등 22일동안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의안처리 현황으로는 조례 67건, 예산 · 결산안 7건, 동의 · 승인안 7건, 건의 · 결의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4건으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차예경 의원은 제140회 임시회에서 산단 무료 통근버스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국지도 60호선 교통불편과 노선변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쳤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정희 의원은 국지도 60호선 개설의 문제점 지적을, 박일배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준수와 복지수요에 걸맞는 인사정책 요구를, 임정섭 의원은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를, 차예경 의원은 황산체육공원 관리의 일원화와 학교급식비 정상화 요구를, 이기준 의원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수립 요구를, 이상걸 의원은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 운영 제안을, 박대조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이정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의 주제로 발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말을 반납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펼쳐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고압이 지나가는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건강, 환경, 등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여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전압이 두배 이상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사업은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리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인해 같은 마을과 아파트에 살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또한, 비회기 기간에는 한옥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협의회를 8번을 개최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협의사항 처리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주민 건의사항 23건을 접수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회기 및 안건처리 현황

구 분	회 기	안건처리현황					
		계	조례안	예산 결산안	동의 승인안	건의 결의안	일반 안건
계	22일간	84	67	7	7	1	2
제140회 임시회	2015. 8. 17 ~ 8. 21 (5일간)	22	18	2	1	–	1
제141회 임시회	2015. 12. 1 ~ 12. 17 (17일간)	62	49	5	6	1	1

사업 타당성 · 적정성 중심의 예산 심의 시민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 예산 편성

2016년도 당초예산 8,410억7,443만8,000원으로 확정
전년도 예산대비 17.63%인 1,260억8,678만5,000원 증액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7,401억8,510만2,000원, 특별회계 1,008억8,933만6,000원 등 총 8,410억7,443만8,000원의 2016년 당초예산을 승인하였다.

양산시의희는 이번 2016년도 당초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임정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날 의결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7.63%인 1,260억8,67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당초예산 심사에서 편성된 주요사업 및 예산액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부지매입 등 사회복지 분야에 2,251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반영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76억원, 화제마을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하수관거정비사업, 화제천유역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746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9억원,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26억원을, 원동면 · 상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삼수 · 답곡 · 화제권역단위종합사업 및 본법 · 상삼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이 반영된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373억원 등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한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68만원, 통도사 자장암 화장실 건립 사업 2억원, 덕계~월평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 3억1천만원, 물금시장 앞 도시계획도로 4억5천만원, 북정동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토지매입) 20억원 등 총 34억9,509만3,000원을 삭감했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 위원회별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계	841,074,438	714,987,653	126,086,785	17.63%
	일반회계	740,185,102	627,996,807	112,188,295	17.86%
	특별회계	100,889,336	86,990,846	13,898,490	15.98%
의회운영위원회	소 계	2,608,345	2,606,450	1,895	0.07%
	일반회계	2,608,345	2,606,450	1,895	0.07%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위원회	소 계	393,125,235	358,705,775	34,419,460	9.60%
	일반회계	390,486,965	356,158,393	34,328,572	9.64%
	특별회계	2,638,270	2,547,382	90,888	3.57%
도시건설위원회	소 계	445,340,858	353,675,428	91,665,430	25.92%
	일반회계	347,089,792	269,231,964	77,857,828	28.92%
	특별회계	98,251,066	84,443,464	13,807,602	16.35%

■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분야 삭감액 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30건	17,462,459	3,495,093	13,967,366
기획예산담당관	309-01(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373,103	92,280	13,280,823
기획예산담당관	404-01(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92,990	8,400	84,590
행정과	307-02(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면동위원회 사업비	6,500	6,500	0
세무과	201-02(공공운영비)	도세 납세(납부) 고지서발송우편요금	12,695	105	12,590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세입 증대 및 세원관리)	71,933	429	71,504
징수과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세외수입 징수율제고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6,845	345	6,500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체납자 조기채권확보)	27,500	2,550	24,950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7,878	187	7,691
정보통계과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도청탐지시스템 구입	40,000	40,000	0
문화관광과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통도사 자장암 화장실 건립	200,000	200,000	0
시립박물관	201-02(공공운영비)	도록 발송 우편요금(소포)	3,000	50	2,950
출)총무과	201-02(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관용차량운영)	103,595	8,732	94,863
출)도시건설과	201-02(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공원및녹지대풀베기사업)	2,550	450	2,100
출)도시건설과	201-02(공공운영비)	연료비(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1,092	84	1,008
물금읍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120,134	4,986	115,148
동면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57,194	2,690	54,504
원동면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34,170	614	33,556
상북면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52,870	1,155	51,715
하북면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51,800	1,848	49,952
중앙동	201-02(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행정서비스제고)	5,100	900	4,200
양주동	201-02(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행정서비스제고)	6,000	500	5,500
삼성동	201-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기본경비)	35,910	2,688	33,222
건축과	405-01(자산취득비)	양산디자인센터 냉난방기 구입	2,600	2,600	0
도로과	401-01(시설비)	물금삼전도시계획도로(소3-115호선)개설 보상비	50,000	20,000	30,000
	401-01(시설비)	북부동 도시계획도로(소2-68호선)개설	21,000	21,000	0
	401-01(시설비)	덕계~월평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10,000	310,000	0
	401-01(시설비)	복합문화타운 진입로 조성공사	276,000	276,000	0
	401-01(시설비)	물금시장앞도시계획도로(중2-68호선)개설	450,000	450,000	0
건설과	401-01(시설비)	호계마을 안길 선형개량	40,000	40,000	0
산림공원과	401-01(시설비)	북정동 완충녹지 시숲 조성사업(토지매입)	2,000,000	2,000,000	0

예산안 항목 하나하나 타당성 검토 통해 합리적 예산 수립

지난 8월 21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7,800억원 승인
공공청사 부지 매입, 사회복지분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반영

양산시의회는 2015년 8월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6,872억424만9,000원, 특별회계 950억9,339만8,000원 등 모두 7,824억7,976만4,000원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심의의결을 요청한 7,824억7,976만4,000원 가운데 예산안 항목 하나하나마다 심의에 신중을 기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 3억7,852만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 세출분야 역시 원안가결 한 뒤 의결했다.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과 예산액은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U-City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30억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4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험도로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 등 수송·교통분야 6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물금 벚꽃길 조성사업,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국토·지역개발분야 26억원 등이 반영됐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계	782,479,764	760,015,986	22,463,778	2.96%
	일반회계	687,204,249	665,922,588	21,281,661	3.20%
	특별회계	95,275,515	94,093,398	1,182,117	1.26%
의회운영위원회	소 계	2,626,026	2,626,026	–	–
	일반회계	2,626,026	2,626,026	–	–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위원회	소 계	382,776,586	374,493,975	8,282,611	2.21%
	일반회계	380,257,725	371,935,252	8,322,473	2.24%
	특별회계	2,518,861	2,558,723	△39,862	△1.56%
도시건설위원회	소 계	397,077,152	382,895,985	14,181,167	3.70%
	일반회계	304,320,498	291,361,310	12,959,188	4.45%
	특별회계	92,756,654	91,534,675	1,221,979	1.33%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수정액	삭감내역
		3건	11,533,441	378,529	11,154,912	
기획예산당관	309-01(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	11,233,441	78,529	11,154,912	시 78,529
문화관광과	시설비401-01	북정동 신기동 고분군 주변정리사업	250,000	250,000	–	시 250,000
도로과	시설비401-01	농어촌도로(하북309호선) 확포장공사	50,000	50,000	–	시 50,000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복리증진 향상 최우선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24% 424억1,991만7,000원 증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사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에 제1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7,286억5,433만6,000원, 특별회계 962억4,534만5,000원 등 총 8,248억9,968만1,000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승인했다.

양산시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임정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등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규모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2%인 424억1,991만7,000원 증액됐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조정과 경상경비 등 소모성 예산 절감, 완료사업 잔액 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총 2,507만2,000원을 삭감했다.

임정섭 위원장은 "금번 예산안은 각종 사업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복리증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 위원회별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계	824,899,681	782,479,764	42,419,917	5.42%
	일반회계	728,654,336	687,204,249	41,450,087	6.03%
	특별회계	96,245,345	95,275,515	969,830	1.02%
의회운영위원회	소 계	2,529,660	2,626,026	△96,366	△3.67%
	일반회계	2,529,660	2,626,026	△96,366	△3.67%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위원회	소 계	407,627,489	382,826,586	24,800,903	6.48%
	일반회계	405,130,996	380,307,725	24,823,271	6.53%
	특별회계	2,496,493	2,518,861	△22,368	△0.89%
도시건설위원회	소 계	414,742,532	397,027,152	17,715,380	4.46%
	일반회계	320,993,680	304,270,498	16,723,182	5.50%
	특별회계	93,748,852	92,756,654	992,198	1.07%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삭감내역
		1건	10,587,310	25,072	10,562,238	
기획예산담당관	309-01(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	10,587,310	25,072	10,562,238	시 25,072

의원발의 조례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 8월 6일

이기준 의원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명변경
   현행 :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으로 관리 하고자 함
3.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 하고자 함
   다자녀가정 수도세 및 하수도세 일부 감면 : 월단위 5㎥ 감면
4.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 8월 10일

한옥문 의원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시행 2014. 8. 7)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현행 규칙 행정서식 중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현행 규칙 행정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대체 : 2건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행정서식	개정사항
양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청원소개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청원철회요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산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별표] 의원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 8월 10일

한옥문 의원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시행 2014. 8. 7)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현행 조례 행정서식 중 법령 근거 없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현행 조례 행정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대체 : 3건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행정서식	개정사항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산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생년월일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5년 11월 16일

한옥문 의원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 (안 별표 7)
2.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 (안 별표 8)
3.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 (안 별표 9)
4.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 (안 별표 10)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7~10]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	[별표7~10]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5년 11월 16일

박대조 의원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 **제안이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4.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②(생 략)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명: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②(생 략) ③ 삭 제

의원발의 조례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5년 12월 15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예경 의원 (대표발의)

정경효 의원

박일배 의원

김정희 의원

이상걸 의원

임정섭 의원

이기준 의원

박대조 의원

■ **제안이유**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임의적 중단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해 「양산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명변경
   현행 :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급식경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식품비 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2항)
5.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급식경비 지원)(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② ————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제명: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식품비 지원)(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 대상은 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 검토 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언론에 비친 양산시의회

경남 일보 2015년 12월 3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말 반납 현장 활동

양산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주말도 반납한 채 관내 주요 사업장 28개소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대상지는 동면금산도시계획도로 (소3-47호선) 등 신규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 21개소 및 평산동 산사태 복구공사 현장 등 7개소.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 활동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사업장을 둘러 보며 시공업체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 및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흡하고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정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는 현장 활동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주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국제신문 2015년 12월 15일

부산대 캠퍼스 조성 지연, 양산시 조례로 압박 나서

민간투자사업 시비 지원 땐 시의회 동의 거치도록 추진
부산대 각종 사업 제동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가 시비 지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조성 지연(본지 지난 10월 30일 자 1면 보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가 시비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하거나 민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의회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업 위치가 바

장 직격탄을 맞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부산대와 항노화 산업 육성 협약을 해 내년 말 양산캠퍼스 내 산학융복합센터가 준공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 동의 없이는 양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메디컬시티 조성 계획에 따라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양·한방 병원을 공동사업자로 삼아 재정 지

울산매일 2015년 11월 10일

양산시의회,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 한옥문 의장을 비롯한 양산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9일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사과정보화 마을을 방문해 사과 농가의 수확을 도왔다.

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 수확 도와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9일 원동면 배내골 사과정보화 마을을 방문해 사과따기 봉

치부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한 원동면 선리 마을을 방문해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왔다.

한옥문 의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주민자 농촌

으로도 양

에 그치지

가 확산되

준 기자

경남 매일 2015년 11월 9일

양산시의회, 아동센터 깜짝 이벤트

▲ 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시 지역아동센터 합창제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로 직접 참여해 동심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회 양산시 지역아동센터의 합창제에서 의원들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로 직접 참여해 동심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옥문 의장은 "양산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맞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illegible]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준비했다.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 되고 [illegible]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illegible]

경향신문 2015년 9월 22일

경남 양산시의회 "양산CC, 시민 20% 할인 공증 약속지켜라"

경남 양산시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산컨트 [illegible]이 시민에게 이용요금을 20% 할인한다고 했지 [illegible]에게 받는 이용요금과의 차액이 20% [illegible] 혜택을 주고 있다"며 "골프장은 약 [illegible]산시도 공증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지도 [illegible]했다.

[illegible]시 상북면 소토리 일원에 160만㎡ 터 [illegible] 개장한 양산CC는 개장 2년 만인 지난 결정을 거쳐 올해 4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바 있다.

시의회는 "양산시는 양산CC가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매년 20억원 이상의 시세가 감소하는 반면 양산CC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고 있다"며 "회원제인 경우 재산세 등으로 약 24억원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대중제인 경우 3억6000만원으로 약 85%의 시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런데도 양산CC는 지난 3월 시민에게 이용요금 20%를 할인한다는 공증을 했지만 사실상 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요금과 비교를 했을 때 1만원에서 많게는 3만5000원 등 대부분 20%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가 골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대중골프장 인·허가 전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등을

경남일보 2015년 8월 5일

양산시의회, '2015. 어린이의회' 개최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2015 어린이의회'을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어린이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양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와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진행과 3주간의 자치활동에 따라, 의장, 의원, 시장, 부시장, 국장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례 및 결의안 등 안건심의와 시정 질문, 자유발언 등의 과정을 시의회의 실제 의사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맞아 체험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감하게 된다.

한옥문 의장은 입교식 격려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의 산실인 의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체험이 양산 미래주역으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되고, 민주시민으로의 소양함양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연합뉴스 2015년 9월 22일

양산시의회 "방사선비상구역 범위 30㎞로 결정해야"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최근 의원 협의회를 열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30㎞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조만간 이를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상계획구역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로부터 반경 30㎞까지는 확대돼야 사실상 전역이 포함된다며 해당 범위를 3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서 시는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인 21.5㎞로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양산시 측은 "시의회 의견과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 결정한 다음 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제140회 임시회

심의안건

1.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 참조 P.14
2.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
   –의원발의 조례참조 P.14
3.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 참조 P.14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참조 P.12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산시장)
6.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7. 양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8. 양산시 이 · 통 ·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9.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0. 양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11.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2.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3.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4.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5.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6.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17.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양산시장)
18.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9.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20.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안(양산시장)
21.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22. 2030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양산시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안이유**

기금운용의 공공성 유지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도 기금운용을 별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수립 ·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금운용 변경규모(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수입계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합계	2,378,424	2,371,974	6,450
전입금	1,351,059	1,351,059	0
예탁금원금 회수	250,000	250,000	0
예치금 회수	719,487	719,487	0
이자수입	12,200	5,750	6,450
기타수입	45,678	45,678	0
지출계획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2,378,424	2,371,974	6,450
비융자성사업비	1,094,520	1,759,520	△665,000
예탁금	550,000	550,000	0
예치금	733,904	62,454	671,450

■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 「지방재정법」 제60조

疏通

2.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변경

1) 위원장 : 부시장(당연직) → 민간위원 중 호선 (안 제2조제2항)

2) 공무원 위원 구성비 : 4분의 1 이하(안 제2조제3항)

3)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 → 3년(안 제2조제4항)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조례안	수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양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코자 함

■ **주요내용**

1. 회계관직 신설(안 제3조제3항)
2. 공인의 글자 변경(안 제4조제1항)
3. 불필요한 규칙 규정 삭제(안 제18조)
4. 준용 규정 신설(안 제19조)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이 · 통 ·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주민편익 도모 및 읍 · 면 · 동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고 있는 이 ·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사항을 개정하여 이 · 통장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보조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3항)

현 행	개정안
제14조(사기진작) ①~②(생략) ③ 이 ·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 · 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사기진작)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보조 사업 지원, 모범 이 · 통장의 선발표창 ———.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범죄 없는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진작 사항을 개정하여 방범활동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0회 임시회

양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3.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세법」에 주민세 세율에 대하여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안 제6조제1호가목)
–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허가) 건 수수료를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부과
2. 양산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자활기금의 운용기한이 2015. 9. 30로 종료됨에 따라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3조)
2. 자활기금의 운용기한 연장(안 제4조제1항)
   2015년 9월 30일 → 2020년 9월 30일
3.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 등 (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疏通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급여의 수급방식이 「맞춤형급여방식」 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양산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대상 및 결정 제외 대상자 조정(안 제2조, 안 제5조)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웅상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 (2015. 3. 18)됨에 따라 양산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산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개정(안 제2조, 별표)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1. 지원대상(안 제2조)
2. 사업의 종류(안 제3조)
3.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4. 예산지원(안 제5조)
5. 실태조사(안 제7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도입하고 경제성을 제고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위탁대상

1) 위탁사무 :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위탁시설 현황

위치 : 양산시 중앙로 50(남부동)

건물 연면적 411.82㎡ (지상3층) / 부지면적 : 274㎡

제140회 임시회

층별 주요시설

층수	면적(㎡)	주요시설
계	411.82	
1층	140.12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사무실
2층	140.12	상 담 실
3층	131.58	회 의 실

2. 위탁사유

1) 우리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으로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2)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제 시행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함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2015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2.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관내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가의 가축분뇨 유입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처리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유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안

■ **제안이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2.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6조)

疏通

3. 교통지도(안 제7조)
   1)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2)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재정지원(안 제8조)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을 위한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행사지원 등의 교통지도 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농림부 권고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의 농식품 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사업자의 정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
2. 시설기준 설정(안 제8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30년 양산도시기본계획(案)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030년 양산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 수립
2. 계획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3년 ~ 목표연도 2030년
   공간적 범위 : 양산시 행정구역 전체(A=485.35㎢)
   내용적 범위 :
   1) 도시특성 및 현황 분석
   2)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3) 공간구조 구상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택지개발 및 산단조성, 시가화 예정용지 등 도시 발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인구증가 추이에 대해 재고하고, 목표인구 50만에 대한 산출근거를 권역별로 재검토할 것
2. 온실가스감축 목표치 달성위한 예산확보 방안 검토할 것
3. 주민 요구사항(하북 반값아파트 미반영에 따른 대책 요청, 하북 고도제한 완화 등) 및 변동사항(가지산 도립공원 해지)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
4. 가산 첨단산업단지는 우리시 관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바, 산단 위치로서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
5. 기 2020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기본계획 마련할 것

제141회 정례회

심의안건

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 참조 P.15
2.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 참조 P.15
3.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 참조 P.16
4. 2016년도 당초예산안
   –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참조 P.10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산시장)
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산시장)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양산시장)
8.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9.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양산시장)
10.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1.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2. 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3. 양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양산시장)
14.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5.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6. 양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양산시장)
18. 양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9.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20.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21.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양산시장)
22.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산시장)
23. 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24.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25.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26. 시립통도사어린이집 신축 동의안(양산시장)
27. 양산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28.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29. 양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양산시장)
30.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 · 운영 및 지원 ·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1.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2.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3. 201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양산시장)
34. 양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35.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6. 양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7. 양산시 정기 ·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8. 양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9.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0. 양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1. 양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산시장)
42.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3. 양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4.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5.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양산시장)
46.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7.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8.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49.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연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양산시장)
50.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52.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양산시장)

信賴

5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4. 양산시 도시공원 ·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5.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6.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7.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8.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59. 양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산시장)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이유**

기금운용의 공공성 유지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을 별첨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수립 ·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금운용 규모(안) – 통합관리기금 외 13종

기금명	2015년도 말 현재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 말 현재액
		수입액	지출액	증감액	
계	46,700,387 –27,615,529	23,615,078 –4,126,118	22,781,395 –3,345,851	833,683 –780,267	47,534,070 –28,395,796
통합관리기금	19,084,858	19,488,960	19,435,544	53,416	19,138,274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기금	84,294	11,023	0	11,023	95,317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00,000	188,000	188,000	0	10,000,000
투자유치 진흥기금	25,461	359	6,000	△5,641	19,82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7,549	21,466	4,600	16,866	184,4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1,313,904	1,482,633	1,142,520	340,113	1,654,017
자활기금	1,464,378	198,746	50,000	148,746	1,613,124
장애인복지기금	602,753	9,525	35,000	△25,475	577,278
노인복지기금	820,008	18,036	18,000	36	820,044
여성평등기금	1,829,012	36,013	60,000	△23,987	1,805,025
문화예술 진흥기금	1,740,645	26,659	87,500	△60,841	1,679,804
체육기금	2,295,993	33,834	98,760	△64,926	2,231,067
재난관리기금	7,117,594	1,969,391	1,586,581	382,810	7,500,404
식품진흥기금	153,938	130,433	68,890	61,543	215,481

■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1회 정례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1.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환경관리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제지역의 축분 악취로 인한 주민고충과 불만을 해소하고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의 문화 ·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2. 청소년 직업 · 진로 체험센터 건립 : 여성가족과
2016년 이후 직업 · 진로체험을 중점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진로체험 의무화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제고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나 인적 · 물적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임
2014년 11월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1,03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진로프로그램 다양성 및 체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86.9%로 직업진로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3. 복합문화타운 건립 : 문화관광과
복합문화타운은 음악당, 갤러리 등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음은 물론 양산천변에 자리 잡아 양산천을 조망하는 누각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수려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양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분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임

4. 초화류 육묘장 부지매입 : 농업기술과
아름다운 양산 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초화 및 국화작품 생산을 위하여 육묘장 부지매입은 꼭 필요한 사업임

■ 주요내용

구 분	사 유	재산규모	추정가액(천원)
취득		토 지 : 13필지 37,431㎡ 건 물 : 3동 8,640㎡ 시설물 : 2식	25,759,564
취득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토 지 : 2필지(3,577㎡) 건 물 : 1동(990㎡) 시설물 : 1식	3,518,820
취득	청소년 직업 · 진로 체험센터 건립	토 지 : 1필지(3,142㎡) 건 물 : 1동(6,000㎡)	15,213,900
취득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 물 : 1동(1,650㎡)	5,000,000
취득	초화류 육묘장 부지매입	토 지 : 10필지(30,712㎡) 시설물 : 1식	2,026,844

■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시 · 도 및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1. 출연대상
상 호 : 한국지역진흥재단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9층
설 립 : 2007. 8. 16.
설립배경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 · 체계적인 지역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진흥과 발전의 동력 확보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8,250천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 · 군 · 구 : 8.25백만원

信賴

3. 한국지역진흥재단 주요사업내용: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지역 인적 역량 강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홍보활동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무조정실의 「지자체규제 관련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기업법과 불일치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위탁 사업을 명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7조의 임원 수 관련 내용 삭제
(안 제7조)
2. 제10조제2항의 감사의 직무 관련 내용 삭제
(안 제10조)
3.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
(안 제14조)
4. 신규위탁사업 신설(안 제19조)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제안이유**

양산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민원처리 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갈등을 관리하여 시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명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옴부즈만 자격요건(조례 제3조)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모경과
   1) 2015. 8. 1 ~ 8. 20 홈페이지 등 공모공고
   2) 2015. 8. 20 ~ 9. 4 공모자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
   * 심사위원 : 행정국장, 공보감사담당관, 시의원, 교수
4. 의회동의 대상자 현황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전문분야
허태구	부산대 대학원 졸업 (산업대학원)	· 진건축사사무소대표(현) · 양산시 건축심의위원회위원	건축사
황정현	울산대 대학원 졸업 (토목공학)	· 부산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공무원 퇴직자 (토목)
신 호	부산대 대학원 졸업 (교통, 도시계획)	· 부경엔지니어링 교통계획부 이사(현) · 양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	교통 기술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1회 정례회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고,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명 띄어쓰기 수정(안 제명)
2.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
   :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 임직원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수 하향 조정(안 제3조)
   (현행) 각 국 · 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보감사담당관
   (변경) 각 국장, 규제업무담당 부서장
2.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정함(안 제5조)
3.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 제5조의3)
4.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를 규제업무담당으로 함
   (안 제8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법령에 근거 없이 양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명예시민에게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

■ **주요내용**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 허가 규정 삭제(안 제5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信賴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인구 30만 도래에 따라 행정수요 증대 분야의 기구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기능별로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사무의 능률적 수행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총정원 조정 : 1,055명 → 1,081명(증 26명)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별표 3)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인구 30만 도래에 따라 행정수요 증대 분야의 기구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기능별로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사무의 능률적 수행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구 신설 : 개발주택국, 감사관, 공원과, 도민체전 추진팀(한시기구), 공동주택과, 정수과
2. 기구 폐지 : 도시개발사업단(한시기구)
3. 기구 통·폐합
   1)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 도시개발과
4. 기구 명칭 변경
   1) 경제주택환경국 → 경제환경국
   2) 복지문화체육국 → 복지문화국
   3) 안전도시건설국 → 안전도시국
   4)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관
   5) 공보감사담당관 → 공보관
   6) 산림공원과 → 산림과
   7) 교통행정과 → 교통과
5. 소관사무 분장(신설, 이관, 통합)
   1) 경제환경국 : 산림과, 공원과 관련 사무분장 (안 제5조의2)
   2) 안전도시국 : 민방위 관련 사무분장(안 제7조)
   3) 개발주택국 : 도시개발과, 산단조성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원스톱팀 관련 사무분장(안 제8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민대상 시행 주기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상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산시민대상 시행 주기를 2년으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2016년도 양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

제141회 정례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9,909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2. 출연기한 : 2016년 3월 31일
3.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자동차 이전 · 말소 시 등록 전 해당일까지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2016. 1. 1 시행) 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자동차 이전 ·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신설(안 제5조의2)
2. 납세담보의 제공 요구 조항 삭제(안 제24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효율적인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운영 등 상위 법령 개정내용 반영
   (안 제3조부터 제3조의6까지)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긴급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3조)
3.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안 제4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信賴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이 개정(2014.5.28)되어"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출연의 대상 : (재)양산시 복지재단
2. 주요사업 내용
   1)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 연계 – 생애지속적형 통합적 사례관리
   2)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지역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
   4) 사회복지 자원개발 – 지역 내 인적 및 물적 자원 파악 및 관리,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자원활용도 제고 등
3. 출연의 필요성
   1)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관리로 투명성과 성과관리 기능 향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2) 지역사회 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보급으로 수요자중심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3) 민 · 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4) 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으로 효율적 사회복지 공급 체계 조성과 복지정책의 경쟁력 강화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공공의 사회복지 책임성 강화
4. 출연금
   1) 출연금 : 20억 원
   2) 출연방법 : 연간 5억원(2014년 ~ 2017년)
   3) 재단규모 : 1본부 4개 시설, 51명
5. 연도별 출연금 계획

(단위 :백만원)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500	500	500	500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안 제2조)
2.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안(안 제3조)
3.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 · 심의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를 통하여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노인복지사

제141회 정례회

업 차원에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경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 행사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복지재단의 체계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양산시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범위 조정 (안 제4조제3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시기 변경(안 제11조제2항)
   → "5일"을"3개월"로
3.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안 제11조제3항)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을"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자 대상을 반영하고, 설치계약 해지자에 대한 재신청 불가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업자 추가(안 제1조, 제2조)
2. 설치계약 해지자에 대한 재신청 불가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3. 서식변경 (안 별지 제1호, 별표)
   1) 신청내용 중 "신청사유"를 "운영기간"으로 변경, 신청대상에 대상자 추가
   2) [별표] 우선 사용권자 대상자 추가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립통도사어린이집 신축 동의안

■ 제안이유

시설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현 시설을 신축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업개요

1) 위 치 :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574-5, 574-8
2) 사업기간 : 2016.1~2016.12.
3) 규 모 : 부지 624㎡ 연면적 398㎡, 지상2층
4) 사업비 : 970백만원
   (시 550백만원, 전경련 420백만원)
5)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信賴

양산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과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총칙 : 안 제1조 ~ 제6조
   1) 시장의 책무(안 제3조)
   2)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안 제6조)
2.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과 역할 : 안 제7조 ~ 제19조
   1)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
   2) 운영위원회 위원장 : 부시장
   3) 위원의 임기 : 2년
3. 회의운영 : 안 제20조 ~ 제23조
   1) 운영위원회 회의 : 정기회(연 1회) 및 임시회 (필요한 경우)
   2) 실무사례협의회 회의 : 연2회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미비점 개선보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정비

■ **주요내용**

1. 위원회의 구성 기준 정비(안 제5조)
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3.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립 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정비(안 제10조)
4. 위탁의 취소 및 해지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5.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1조~3조)
2. 시책과 장려사항(안 제4조)
3. 대상사업 및 지원(안 제5조)
4. 행사의 위탁, 지도 · 감독, 준용 등(안 제6조~9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 · 운영 및 지원 ·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 · 운영 및 지원 · 육성에 관한 조례 제22조(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제141회 정례회

과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안 제22조)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우리시의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가 활성화 되면서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문화축전 추진위원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현행 :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 「양산시 각종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적용범위 신설(안 제1조의2)
   1)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2) 양산웅상회야제 추진위원회
   3) 원동매화축제 추진위원회
3.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안 제2조, 제4조)
4.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하북체육공원 2구장, 삼성체육공원 준공 등에 따라 체육시설을 추가코자 함

■ 주요내용

1. 하북체육공원 2구장, 삼성체육공원, 웅상생활체육공원 준공 및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야구장 등 시설물 추가(제18조제2항, 별표1)
2. 추가된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전용사용료 신설 (안 별표2)
3. 추가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 신설 및 무료 개방중인 트랙 개인연습사용료 규정 삭제(안 별표3)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이 개정(2014. 5. 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함. 의결 요청 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信賴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3)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2. 출연의 필요성
   1)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 시급 및 보증 공급 여력 부족
   2) 양산지역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3. 출연의 대상 및 출연금
   1) 출연의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2) 출연금 : 2억원 × 2015년도 : 1억원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2.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제3조)
3.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제12조)
2.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제14조)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제명을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하

제141회 정례회

고, 관련 조항 및 조문체계정비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 변경
   (현행)「양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변경)「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4. 전통시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9조)
5.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13조)
6.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제17조)
7.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22조)
8. 상인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3조 ~ 제28조)
9.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9조 ~ 제37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양산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고, 시장 사용료 현실화 등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현행)「양산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변경)「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2.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제3조)
3. 시장 개설 및 시설기준, 시설개선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5조)
4. 시장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14조)
5.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 제34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편리한 이용 및 복지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이용허가 관련 항목 적용 변경(안 제5조제3항)
2. 수탁자의 이용료 결정 권한 폐지(안 제7조제2항)
3.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이용료 명시(안 별표)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信賴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편익증진 및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한 완화 범위 확대 (안 제3조)
2. 건축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기능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안 제7조, 제8조, 제10조)
3.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 (안 제17조, 안 별표2)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안 제18조)
5. 건축사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확대 및 대행 수수료 현실화(안 제21조, 안 별표3)
6. 대지의 조경의무 면제 건축물 확대 (안 제25조)
7. 공개공지 등의 확보 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안 제27조)
8.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별표 중 변경된 용어를 바로 잡음 (안 별표 6, 별표 7)
9.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안 제33조)
1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기준 삭제 (안 제34조)
11.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횟수 지정 및 적용법령 정비 (안 제35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명 및 용어 띄어쓰기 수정(안 제명, 제1조, 제3조)
2.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제3조의3)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 추가 (안 제4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주택법」 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 운영하였으나, 국민주택 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1회 정례회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민간주도의 불법광고물 정비 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 신설하고,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2.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안 제26조)
3.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 신설(3,000원)
   (안 별표 3)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법령의 위임 없는 환경조사 결과의 공개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자의 권리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법령의 근거 없는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규정 삭제
(안 제16조제1항)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상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 및 사업장에 감량기기의 도입 및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개축·증축 시 감량기기 설치 권고 (안 제5조)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규정 및 안전한 인증 제품 사용 (안 제6조)
3.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보조금 지원 (안 제7조)
   – 원 칙 :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 지원

信賴

–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관련규정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상위법 근거 조문 개정(안 제1조)
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 및 기준 설정(안 제6조)
3.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안 제11조~제18조)
4.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등 신설(안 제13조)
5. 평가결과 부진한 업체는 패널티부여, 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안 제19조, 제20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회구성)① (생 략) ② 생략 1.~2.생략 3.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4명 이내 ③ 생략	제12조(위원회구성)① (생 략) ② 생략 1.~2.생략 3. 현장 평가단을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이내 ③ 생략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 종량제 봉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공정 · 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및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안 제9조)
2. 대행료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 (안 제9조의2)
3.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 제7조)
4.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인상(안 별표5)
5.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안 별표6)
6.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납부필증 가격 인상,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 및 개별 계량장비 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수수료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필증 방식에서 납부

제141회 정례회

필증과 개별 계량장비 방식으로 변경
(안 제5조, 제11조)
2. 개별 계량장비 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수수료 지급 (안 제11조)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인상 (안 별표 3)
4. 상위 법령 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삭제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연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입안사유
1) 산업기술 연구 공간과 통합 기업지원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양산 권역 주력산업에 대한 지역 중견 · 중소기업의 제조기술혁신 지원과 지역산업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연구시설)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
1) 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시청	양산시 다방동 512번지 일원	18,177	감)6,030	12,147	양고제 2012-166호 2012.07.19

나. 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시청)	공공청사 변경 18,177㎡→12,147㎡	연구시설(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일부 축소

2) 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결정 (신설)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 · 화체육시설:연구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연구시설	양산시 다방동 534-6번지 일원	-	증)6,030	6,030

나. 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구시설	연구시설 신설 6,030㎡	양산 권역 주력산업에 대한 제조기술혁신과산업기술 연구 공간 조성을 통해 통합 기업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함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서

信賴

시민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도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 마련 및 규제개혁 관련 규제개선사항 발굴 및 정비

■ 주요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반영
   1)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대상 정비 (안 제9조)
   2)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안 제58조제6항, 안 제60조)
   3)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제7항)
   4) 기존 입주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 정비 (안 제63조의2)
   5)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내 모든 식품공장 허용 기준 마련(별표 15, 별표 16)
2. 규제개혁 관련 규제업무로 추가 발굴된 사항 정비
   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및 제26조(개발행위허가 취소) 삭제 법률 근거 없는 조항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운영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성 및 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65조, 제69조) 매월 정례회 개최, 비공식적 심의위원 개별 접촉 금지 및 안건 심의기간(60일 이내) 및 반복심의 횟수(3회) 등 회의운영 기준 마련
3. 그 밖에 상위법령 불일치 법조항 정비 (안 제17조, 제58조, 제63조, 제68조의2, 별표 22)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건전한 여가활동과 재충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범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2. 시설 관리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 규정(안 제3조)
2.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4조)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안 제5조)
4.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안 제6조)
5.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안 제7조)
6.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부여(안 제8조)
7. 교통량 감축 활동 적용 예외 규정 명시(안 제9조)
8.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기한(매년 8월 10일까지) 등 (안 제10조)

제141회 정례회

9.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안 제11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법령에 근거 없는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 제 ·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함

■ **주요내용**

1. 목적 조문 약칭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6조의2)
2.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범위 제한사유 삭제(안 제15조제2항)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도시공원 ·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규제개선사항 정비에 따른 점용료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 반영에 따른 점용료 환불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2.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1) 상위 법 근거 조문 개정(안 제1조)
   2) 공원점용 허가 대상 공원 변경
      (안 제3조제1항제4호)
   3) 가설건축물의 연간 공원 점용기간 변경
      (안 제3조제2항제3호)
      – 3개월 → 180일
   4)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정의 삭제
      (안 제3조제3항제3호)
   5) 철도변 녹지안 점용허가 사전 협의
      (안 제4조제2항제2호)
      – 철도청장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자
   6) 공원 및 녹지 점용대상과 점용요율 개정(안 별표)
3. 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10대분야에 해당되어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상위 법령 근거 없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6조)

信賴

2. 불합리한 지방규제 해당되는 별표 이용유의 사항 삭제 (안 제18조, 별표2)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실제 운용되지 않는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여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 등을 조정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현행 :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변경 :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목적과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안 제1조~제2조)
3. 세입 · 세출, 융자대상,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4. 융자한도 및 이율,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5. 상환기간 연장, 이자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6. 감독 및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3~제18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 시 사용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 (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2. 배수설비 사용 개시 등의 신고 사항 삭제 (안 제3조제1항제1호)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60% 인상권고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를 인상코자함

■ **주요내용**

1. 하수도사용료 평균 40% 인상(안 별표1)
2.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기본요금4.2% 및 초과요금 21.4%인상(안 별표6)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규정 변경 (안 제25조제2항제2호가목)
4.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41회 정례회

양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하수도법」 개정(2007.4.11)으로 조례 위임 근거 조항(하수도법 제18조)이 삭제되고 현행 「하수도법」(2014.6.3)에서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지침으로 정함에 따라 근거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분 자유발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계획, 상습정체 예상 재검토 해야"

제140회 임시회 2015년 8월 17일
김정희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노선 변경에 대하여 과거에 변경 결정된 사항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행대로 시공할 경우에 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완공되어 정상 운행될 경우에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과 주간에는 상습 정체가 예견되며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 통행량이 적을 시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현시점에서 바로 보고 바로 잡아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 발전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진정, 공공의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더 큰 것을 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지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행대로 진행이 된다면 교통 혼잡 해소가 아닌 교통지옥을 자초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운수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예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국지도 60호선은 자동차 전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병원에서 유산파출소 사이에 교차로가 4군데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장안에서 4차선으로 질주해오는 차량들이 신호등을 4번이나 만나게 되면 그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자동차 서행 주정차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신기 해강 아파트에서 베데스다 병원까지 600여m 구간은 급경사와 곡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많아 최고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더라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 !

우리 모두는 양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산의미래 국지도 60호선 공사를 이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키우고 자라는 우리들의 후손에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멋진 국지도를 만들어 큰 재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현 정부의 기조와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볼 때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원과학기술대까지의 지방도를 확장하고, 60호선에서 내려오는 나들목을 확장하여 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서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보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국지도 60호선이 원안에서 왜 변경되었는지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지도 60호선이 상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산~김해 간 고속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

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제140회 임시회 2015년 8월 17일
차예경 의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 보류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의 통과와 학교급식 관련 현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무상급식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유료화된 것이 5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으로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나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의는 같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3항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먹는 밥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성장급식, 평등급식, 영양급식이어야 합니다. 한 그릇의 밥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불어 넣는 과정입니다.

이런 급식이 정치적인 정쟁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산시 재정과 GNP(국민 총생산) 2만8천 달러가 넘어가는 소득 수준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더 확대되고 부모로서 자식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첫 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상급 기관에서 보이는 압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로 고통을 나눈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된 학교에서는 급식비 미납을, 우리 아이들은 급식의 양과 질의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이미 몇 년째 계류 중이며 일부 의원들께서는 학교 급식은 지방자치 사무라고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학교 급식 조례에서처럼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나 범위가 해마다 바뀌고 급기야는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를 발의하여 급식비 예산 지원 규모나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년 지원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영양급식, 평등급식, 성장급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급식이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기에 단 한 명의 아이도 밥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벌써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 · 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급식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경상남도나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고 질타와 핑계를 멈추고 우리가 양산시에서 시민과 시의회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학교 급식의 정상화를 바라는 청원서 1만7천

여장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우리의 부덕으로 그리된 것만 같아 미안함에 좌불안석입니다. 이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우려야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랍니다.

첫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동의하여 주시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를 예산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의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작년 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재개로 양산시가 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한다면 시민들도 정책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을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가짐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의 현재의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시장님의 의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위한 도심 속 물놀이 공원 개설해야"

제140회 임시회 2015년 8월 17일

임정섭 의원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양산 지역 도심 속 물놀이 공원 개설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은 물금읍 워터파크 내에 간이 물놀이 시설과 중부동 청어람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가족과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물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생태공원,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나 울산광역시 여러 지역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만 3군데 도심 속 물놀이장을 조성하였고 남구에서도 3군데 도심 속 물놀이장 조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북구 화명생태공원,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등의 조성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사상구청에 따르면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이 7월 28일 개장한 이후 지난 8월 3일까지 모두 3만2천643명이 이곳을 찾아 더위를 식혀, 하루 평균 4천600여 명이 수영장을 이용한 셈입니다. 특히 첫 주말인 지난 8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만 무려 1만 명 이상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의 장점은 주민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동

네 친구들과 다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는 점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에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깨끗한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차장은 인근 공영주차장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민들에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양산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도심 속 물놀이장 확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양산시에는 남양산역 인근 근린6호 분수공원과 현재 조성 중인 디자인센터 옆 근린7호공원, 그 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심이나 웅상지역 주민들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린 7호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 중이므로 설계변경과 LH측과의 협의로 물놀이 시설을 추가한다면 예산의 절감 효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30만과 젊은 신도시 양산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편의 시설인 도심 속 물놀이장 신설을 제안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산문화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시설 통합 관리해야"

제140회 임시회 2015년 8월 21일
차예경 의원

양산시 황산문화체육공원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10일 입법예고를 마쳐 조례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황산 문화 체육공원은 우리시의 미래이며 블루 오션이라고 여기고 단기 · 중기 · 장기 계획을 세워 6,560억원을 들여 캠핑장, 야구장, 생태탐방 선착장, 물놀이 시설 등의 시설과 철도횡단 보도교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성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관련 부서만 해도 건설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물금읍사무소, 보건소, 도로과 8개 부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은 계획된 시설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소관부처별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공원 내 시설별 담당부서가 많음에 따라 공원관리에 비효율적입니다. 양산시 황산문화체육공원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 운영 조례가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 부서에서 관련 시설별 조례가 제정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부서별로 운영 조례 제정과 중복된 업무로 인력 배치 등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하여 인근 부산삼락공원체육공원, 구미시체육공원 등의 지자체에서는 낙동강 변 조성된 시설의 관리 감독을 총괄 관리부서 두고 각 시설별 위탁부서를 두어 업무를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통합하고 각 시설별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향후 각 시설별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이 절실하나 해당 부서별 운영조례 제정으로 업무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총괄 부서에서 황산문화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원에 들어설 각각의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업무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조례제정 전에 업무 협의를 통해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급함을 인지하시어 빠른 시일 내검토하여 정책에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해야"

제140회 임시회 2015년 8월 21일
박일배 의원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고위직 공무원 2명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고 또 사무관 1명이 직위해제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커다란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7~80년대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역군들이며 양산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우리시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근래에 와서 공무원 복지가 향상되었지만 예전에는 공휴일이면 산불방지, 신품종장려, 퇴비증산 등 더 바쁜 나날을 보낸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올 3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는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도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데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산단, 하수종말처리장, 골프장 등에 취업하는 것을 시민들은 "관피아"집단이라 단정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 퇴직자 중 재취업을 하는 사람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데 이들 10%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시민들이 퇴직공직자 중에서 우리 시 출자 출연기관, 위탁기관, 산단 등에 재취업하는 공직자는 무엇을 근거로 재취업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능력이 탁월한지, 경제사정이 곤란한지, 아니면 충성도가 탁월한지 등에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보면 1년 이상 정년을 남기고 명퇴하여 명퇴수당, 연금 등을 받고 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쓰리잡"형태가 되면서 예산 혜택을 3중으로 받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 5% 남짓이었다가, 현재 10.2%이며 18만 명에 달하는 구직 단념자와 37만 명을 넘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냥 쉰다는 10만 명의 청년을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3포시대"에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철저히 지켜서 청년실업자와 그 가족들에게 모진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들도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준표 지사께서 군 단위 부단체장 직급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시킨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시 웅상출장소장, 김해장유출장소장 등 인구 7만이 넘는 출장소 소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나동연 시장께서 홍준표 지사께 건의하셔서 현재 인구 3만, 4만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시킬 때 그 보다 인구나 행정수요 면에서 3배 이상인 시의 출장소장 직급도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웅상"이 제대로 추진될려면 웅상출장소장 직급을 부단체장으로 상향해야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홍준표 지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웅상출장소장 직급을 부시장급으로 상향시켜 웅상지역이 조금도 소외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퍼스트웅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평등급식 재개되어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일
차예경 의원

본 의원은 2014년 수준의 학교 급식비 예산 편성 촉구와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의 발의가 상정 보류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의 통과와 학교급식 관련 현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상처 받지 않는 평등급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 학부모들이 거리에서 "급식도 교육"이라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쳐 온지 벌써 1년입니다. 학교 급식 파행은 경상남도와 18개 시 · 군이 올해 급식비 지원을 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 초 · 중 · 고교생 중에서 67%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저소득층 학생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전국 꼴찌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에서 학교 급식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영남권 4개 시 · 도 식품비 평균지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미정으로 도와 18개 시, 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66,4451명을 제외한 218,638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필요금액 976억원 중 305억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305억원 중 지방비 분담률은 도 20%, 시군 80%로 경상남도가 61억원, 시군 244억원을 편성하기로 시장 · 군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중 급식비 예산 편성을 보면 양산시 22억원, 도 5억원, 교육청 14억원, 국비 23억원을 합친다고 해도 총 64억원입니다. 2014년도 113억6천만원에 대비하면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 · 군 지원 금액은 71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의 집행 대상을 보면 국비 23억은 저소득층 자녀 62개 학교 5,811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청 14억원은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100인 미만 6개 학교 243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 도비 예산 27억원은 지원 대상이 불투명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의 예산편성도 불확실하고 저소득층은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무상급식의 범위와 지원 대상은 미정이며 예산 축소로 인한 지원 대상에 관한 소문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무상급식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을 묻고자 시민들이 나서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도내 보수 성향 시민 사회 단체들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소환 청구인 인원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청구권자 파악이 힘든 상황이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재보궐이 있던 고성을 제외한 17개 시군 지역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도내 평균 14%이지만 양산시는 44,968명으로 유권자의 20%에 달하는 시민이 무상급식의 중단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등 급식은 이렇듯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유추되고, 규모의 축소로 지역 간 반목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등 급식이 정치적인 정쟁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무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상남도나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거나 질타와 핑계를 주고받는 모습을 멈추고 시장님과 시민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랍니다.

첫째,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발의에 동의하여 주시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가 예산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의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2014년 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필요

하다는 것을 본 의원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의 현재의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시장님의 의지로 의무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최저임금 보완역할로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일
박대조 의원

본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1일 8시간, 월 21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한 달 임금을 계산해보면 간식비와 주차 수당을 포함하여 약 126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가를 감안한다면 월 126만원으로 한 달 생활을 영위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가족이 실제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임금은 1인 노동자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노동자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임금제는 2015년 10월 현재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도 18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 생활임금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048원 많은 6,628원으로 많게는 7,150원, 적게는 6,050원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결정된 생활임금 평균금액은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29원 많은 7,159원 수준으로 정해져 최저임금의 18.7%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생활임금제 시행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약 860명인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이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 · 시행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한 다음 점차적으로 출자 · 출연기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기업도시로 발돋움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의욕 상승과 책임감 향상으로 일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생활안정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임금상승분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생활임금은 가족의 행복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가 더욱 살기 좋은 양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앞장서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수립 촉구"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일
이기준 의원

본 의원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출몰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는 2015년 현재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5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5개 권역별로 5명씩 나누어 피해방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산시 자료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출동건수가 246번이었고, 연도별로 출동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109건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 137건으로 25%나 증가하였습니다. 포획동물별로 살펴보면 멧돼지 71마리를 비롯하여 고라니 132마리, 까치 23마리, 까마귀 10마리, 청둥오리 10마리, 직박구리 9마리, 꿩 5마리 등 총 260마리를 포획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멧돼지 포획 비중이 27%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양산 도심지역에 야생 멧돼지가 잇달아 출몰해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기사도 났습니다. 멧돼지는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14건의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국제신문 2015년 10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신도시 중부동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가 하면, 물금읍 성산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와 남부동 청어람아파트 인근에서도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산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 1명이 크게 다치고 대한수렵협회 회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경북 군위에서 남편과 산행을 하던 50대 여성이 멧돼지에게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물려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여 먹이가 부족하여 먹이경쟁으로 인해 맷돼지가 농가나 시내로 내려와 재산과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예방대책과 현실적인 사후 처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사전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사하여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 균형 유지는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종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피해예방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이상으로 번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개체수 증가로 인해 도심에 출현하지 않도록 개체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100헥타르 당 전국 평균 4.3마리로 2012년 3.8마리, 2013년 4.2마리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상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 1.6배나 많은 6.9마리로 조사되었고, 양산시는 그보다도 많은 7.1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멧돼지 개체수가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것으로 우리시도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체수 증가를 막기위한 방법은 광역 순환수렵장 개설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 순환수렵장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방지를 줄일 수 있고 건전한 수렵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순환 수렵장의 조속한 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산나물, 밤, 도토리 등 야생동물의 먹이를 불법 채취하는 것도 야생동물 서식처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속과 더불어 야생동물의 먹이공급을 실시하여 서식처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

다. 현재는 봉사하는 의미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는 봉사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넷째,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취해야할 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주요 산책로 입구에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잘 보이게 설치하여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유기적으로 움직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는 농작물과 인명피해시 보상을 위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피해방지단이 2013년부터 총 246회 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조례에 규정하는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해준 경우가 단 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면적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로 규정하여 보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보험계약을 통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피해 농작물에 대해 직접 보상해 주던 방식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자체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추구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우리시도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먹이가 부족하여 야생동물이 또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불황 대안인 협동조합도시 같이 고민해봐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일

이상걸 의원

양산시의 미래 경제가, 진정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행복으로 연결시켜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합법적으로 양산된 비정규직문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지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으로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적 금융위기는 그리스 사태 등 남유럽의 경제위기로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세 둔화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도 장기화되어가고 있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고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국민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장기불황과 정책의 대안부재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은 나와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해 삼십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의 오분의 일이 일하지도 않고 취업을 준비하지도 않는, 취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헬조선' 시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탓이라고 성토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득배분이 기업에 편중되어가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제가 활성화 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대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지난 10월 29일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100억달러, 우리 돈 11조3천억원을 매입하여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SK, 롯데, 한화, 두산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 면세점 영업이익의 10퍼센트, 약 1,500억원에서 2,700억원 정도를 사회 공헌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사업권만 따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기에 그 이상 벌 수 있기에 2,000억원 정도는 아깝지 않다는 논리겠죠.

자사주 소각에 쓸 돈과 면세점 허가 대가로 내 놓겠다는 돈을 기업의 미래투자를 위해 쓴다면 정부의 논리가 맞고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씁쓰레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네요. 대기업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단기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거두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해 주려하고, 담뱃값인상, 주민세인상,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이제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까지, 서민들 부담이 높은 세금만 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양산시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리도 맞지 않고 이야기 해 보아야 뜬구름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테니까요.

하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경제 현실에서 양산시민들에게나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양산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일자리 채용마당을 열었습니다. 구직자 1천여명이 찾아와 일자리를 구했지만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눈높이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특히 질 좋은 일자리, 평생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산시가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중 하나였지만 한국 고용현실의 벽을 답습하는 어쩌면 양산시 행정으로서 한계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양산시 행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국가 공모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을 받아 왔고 많은 지역 산업단지를 설치하여 양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지방산업단지설치 등은 전국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 내면서 양산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불황의 늪을 견디어 내고 양산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불황속에서 견디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씨앗을 양산에 뿌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양산을 협동조합도시로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한, 협동조합도시 양산이,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책적 나눔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들에게는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농협과 수협 등을 떠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반관반민의 단체로 협동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내는 데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색하고 생소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즉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 나라 밖의 일에 대해서 경험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생활적 경험의 부족 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을 보기위해서 '시장에 간다.' '마트에 간다' 고 말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쿱, 즉 협동조합에 간다' 고 말할 만큼 협동조합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구단인 'FC 바로셀로나' 는 17만 시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오렌지, 썬키스트는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6,000여 감귤 생산 농가의 힘을 합쳐 만들어낸 협동조합입니다. 세계 4대 통신사로 손꼽히는 미국의 AP통신 또한 협동조합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임금은 이탈리아 평균 임금의 두 배에 달하고 실업률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3만명에도 못 미치는 작은 도시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은 반세기만에 스페인에서 매출이 9위로, 2010년 현재 연 140억유로, 20조원에 이르고 8만 5천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8,000명이 일시 휴직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해고 없이 극복하였고 그리스발 경제위기가 스페인으로 확산 될 때도 전년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주식회사는 앞에서 들은 것처럼 주주의 이익에 몰두하여 미래투자보다는 주식소각이나 당장의 눈앞에 이윤을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면 협동조합은 가치경영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윤을 주주의 수익으로 쓰여 진다면 협동조합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윤을 협동조합의 가치를 위해 쓰여 진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생산자 협동조합은 구매가격을 인상시켜 돌려주고 노동자 협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을 추가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가치의 양면을 조합원의 협동으로 실현하고 있는 경영체제인 협동조합은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위기에서도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원을 우선에 두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협동조합의 창립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5명만 모여 생각을 함께하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산에서도 11개의 일반 협동조합과 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한 팀도 있을 것이고 협동조합을 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아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팀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협동조합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해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문제는 여전히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 누구하나 도와주는 기관이 양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절차도 경남도를 통해 하고 있어 양산시는 신고 접수된 현황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에 대한 양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학습지 선생님들, 대리운전 기사님들,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네 빵집들, 은퇴한 자영업자의 일자리인 커피전문점이나 김밥천국 사업,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생존권을 잃어가는 동네 슈퍼들,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장경쟁력을 만들어내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도 시장에서 스스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우리 삶에서 일상화되면 제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5명의 노동자가 난로공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 그룹으로 발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산시 행정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고기를 주는 지원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산시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협동조합이 필요한 업종들을 조사해 내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해주고 양산시민들이 일상에서 협동조합에 대

한 이해와 자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꿈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해야 하기에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협동조합 도시 양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계획을 설계해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동연 시장님! 양산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이탈리아의 볼로냐처럼 협동조합도시로 탈바꿈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입가에 미소가 절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노후 산단 개선과 신설 산단 정책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의 산단 정책으로 우리 양산은 약 4만8천명의 제조업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중견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덧붙여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티브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협동조합도시 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불황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다 포기하고 니트족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그들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경제인구로 참여 해 낼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 봅시다. 니트족으로 빠지는 청년들에게, 하루 건너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 비슷한 사람이 모여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협동조합의 씨앗을 양산에 제대로 한번 뿌려봅시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씨앗인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에 걸맞은 일을 한번 벌려 봅시다. 감사합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단위탁 재검토 촉구"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4일
차예경 의원

본 의원은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관련 예산 등이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69개 사업체가 배출하는 연 8,000여 톤의 오폐수를 공동 처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현재 양산시 환경관리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175개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양산시를 포함하여 12개의 시설이 있고, 전문기업 및 협의회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60개 시설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며, 양산시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하루 시설용량 13,000톤의 약 10% 수준인 1,500톤에 불과하며, 공단 설립 당시에 처리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 것이어서 양산시와는 상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2항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기본원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에 있어 잠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시 인건비부문에 있어서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수 상승과 성과금, 정년보장 등을 빼고 산정하였기에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은 직영하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외의 경제성, 전문성, 탄력성, 안정성, 책임성에는 민간위탁이 더 우위에 있고 특히 전문 집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의 축적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가능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용역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법령과 정부정책, 그리고 전국 91.5%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

고 있는 것을 볼 때, 양산시는 관련법령과 정부정책에 역행하여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2015년 2월 9일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실시를 촉구한 바 있고 2015년 4월 27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완료 이후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에 대해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부 용역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팀 구성 없이 현 유산 폐기물 매립장팀과 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하나로 묶어 환경 사업팀을 구성하라는 용역 결과를 부정하고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팀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주장대로라면 인근의 기장군 도시관리 공단은 16개 시설에 1실 3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29개 시설에 5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12개 시설에 1실 7팀으로 운영하게 되어 조직이 더 비대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은 한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단 조직의 경직성으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대행 체제로의 전환 시 기존인력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고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결과에서 공단 위탁 시 단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웅상도서관 업무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과원이 발생했고, 도서관도 없는 공단에서 사서 직렬이 버젓이 한 시설의 팀장을 맡고 있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낭비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인구 30만 달성을 하는 등 행정역량 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 면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샘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산시의 행정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양산을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법령 및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지방정부의 시장개입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양산시가 펼칠 수 있는 최고로 생산성 높은 행정이라고 믿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만 중견도시에 걸맞은 복지정책 펼쳐 나가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4일

박일배 의원

우리 시는 30만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만 성장 뒤에는 늘 소외 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그와 더불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증가되어 가계소득의 30%이상을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께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4년말기준 국가부채, 가계부채, 소규모 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781조 8,000억원이라고 집계되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재집계하면 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빈곤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즉, 성장이라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빈곤층이 계속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절반이 노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한한 데이비드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소득불평등 심화로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국정과 시정이 복지분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복지 종사자나 학자, 복지수혜자들도 서슴없이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관련법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또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복지전달체계가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직렬별 공무원수를 보면 행정, 토목 등과 비교해 복지직 공무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도 30만 중견도시에 걸맞은 전문 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가 복지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든지,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수혜를 입는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한 혈세로 낭비 없이 소외계층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복지과 공무원이 전문화된 시책으로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공무원수가 턱없이 모자라 많은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웅상 지역은 행정 수요에 비해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산동의 경우 인구는 물금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비슷합니다. 웅상출장소 개청 당시에 4개과로 출발했는데 2년도 안되어 슬그머니 1개과가 통합되어 현재까지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도 증가하고 많은 시설물이 건립되어 오히려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과가 오히려 줄어든 비정상적인 조직 구성이 되었습니다. 반면 본청에는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많은 부서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웅상출장소 관내 4개동장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 출장소의 지시나 협조 요청에는 미온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와 같이 사무를 대폭 위임하고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위임하는 등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고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는 30만 도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과밀지역에 이 · 통장 수 늘려 업무효율 올려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4일

이기준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인구 30만 돌파와 함께 급속하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과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시정홍보와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고 행정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이 · 통 · 반장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 이 · 통 · 반 설치조례는 1984년 양산시 이 · 통장 정수조례, 양산시 이 · 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조례 및 양산시 반설치조례로 제정되어 운용해오다 2002년 새로 통합 제정되어 지금의 조례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양산시 이 · 통반 설치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아파트지역의 이 · 통은 3개반에서 15개반으로 구성하되, 적게는 60세대에서 많게는 750세대까지로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반은 최일선 행정의 최소 조직단위로서 20세대에서 30세대로 구성되어 행정공지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1월말 기준 읍면동별 이 · 통 · 반 현황을 살펴보면 양산시는 전체 260개통, 3,116개반, 115,636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 개의 통에 750세대 초과인 곳이 물금읍 12개, 양주동 11개, 서창동 7개 등 총 56개의 통이 있고 원동면과 중앙동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의 21.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물금읍 22개, 양주동 13개 등 총 96개로 3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 경우를 봤을 때 한개 반에 50세대를 초과하는 곳이 288개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금읍 33통 마을은 1,461세대로 8개반 중 5개반이 조례기준보다 훨씬 많은 136세대에서 440세대까지 구성되어 있고, 1,13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동면 12통 마을은 1개반이 717세대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양주동 서이동 택지는 1,297세대에 7개반 모두 130세대에서 240세대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이 · 통장의 업무과중이 눈으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끝까지 미치지 못 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반상회를 통한 시정시책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과 공동관심사항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파트 중심의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이 · 통반장 제도를 고수한다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는 반장제 완전폐지, 광주 광산구는 자연마을 반장만 존치하고 도시지역 동의 반장은 폐지, 부산시 서구는 반장제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외 많은 지자체에서도 반장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아파트 지역의 반장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일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반장을 축소시키고 인구 과밀지역의 이 · 통장수를 늘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이통장의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 통장이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도맡아 해오고 있고, 아파트지역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어 반장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반장제 시행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지역과 자연마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밀지역은 분리하고 반장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지역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30만을 넘어선 양산시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행정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행정력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 주민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양산시는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도양산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타운 건립 위치 · 절차문제 의회역할 중요"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7일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합문화타운은 양산시 인구 30만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음악공연장과 갤러리를 세워, 양산시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충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은 양산시 지역단위마다 접근성이 용이하게 많이 건립할 수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산시 의회의 의원들은 누구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화타운 건립건이 이번 양산시 의회의 정례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은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다.

양산시 집행부가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은 양산시 신기동의 우방아파트 부지입니다. 현존하는 아파트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이었다고 칭찬해야 할까요. 다양한 문화공간은 필요한데 양산시의 부지가 포화상태라 문화공간을 지을 땅이 없어 현존하는 아파트부지에 짓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받기위해서 부족해지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 건설해 놓은 도로를 없애버리고 아파트 부지로 넘겨주는 무모함을 벌려가면서 그 자리에 꼭 복합문화타운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의 위치가 문화공간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의 문화인프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꼭 지어야 한다면 무모한 발상을 해서라도 본의원도 그 자리에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고자 하면 78번을 타고 우방아파트에 내려 이용해야 하는데 78번 노선

버스는 1시간간격으로 다니는 버스입니다. 다른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북부시장이나 신기주공아파트에 내려 1km가량을 걸어서 이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지역의 현존하는 문화공간은 양산시청옆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고 북정동에 양산문화원공연장이 있습니다. 삼성동과 양주동 주민들은 현존하는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문화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면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웅상지역이나 상하북지역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아직 문화공연장이 형성되지 않은 물금지역에 지어야 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한 질의 응답과정에서 집행부의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먼저 받아와서 시의회를 압박해 예산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역행하더라고 집행부가 결정하면 무모하고 무리하더라도 사업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복합문화타운 사업예산은 이번 정례회가 진행되는 회기중, 12월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지특예산 5억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집행부는 받아왔고 국가예산을 받아 왔으니 양산시의회를 예산을 승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수렴되는 투명하게 소통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그러한 절차가 이행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입안하는 집행부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상부기관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양산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합문화타운 건립사업은 중기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상부기관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예산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지특 5억을 받아왔으니 양산시의회에 예산을 승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복합문화타운 사업예산에 대한 승인절차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건과 예산통과에 대한 승인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회의는 양산시의회가 스스로 양산시민들 앞에 양산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독선을 "그래 잘한다", "양산시의회는 집행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갈게 절차 무시하더라도 하고 싶은대로 해라"라고 승인하는 요식적 절차만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싶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원임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본 의원은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건과 예산통과에 대한 승인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본회의과정 우리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의원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 충실히 수행 다짐"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7일
박일배 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1991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 제도의 제약, 전문성 부족, 의회역할 등의 한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이 제도 도입 취지였지만 우리 의회는 기초의회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저희 의원들에게 과감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양산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나무랄게 아니라 우리시의회의 책임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한다"는 만고 진리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해 시민 권력은 줄어들고 집행부 권력만 확대 됐다는 게 이번 청렴도 최하위 평가 결과물입니다. 2013년 2014년 청렴도 평가도 3등급이지만 전국평균에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청렴이 지방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렴지수가 낮은 것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게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하여 거듭 사죄드립니다. 내년에는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에 충실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7일
이기준 의원

본 의원은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는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 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라고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 개념으로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경제활동입니다.

공유경제는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교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을 만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치며 소유의 무의미함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보면 자동차부문에는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이 있고 숙박부문에는 에어비앤비, 금융부문에는 렌딩클럽 등 많은 부문에서 공유경제의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우버는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로 310여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190여개국 3만 4천개 도시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앞으로도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말 현재 서울시 13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산시, 부산시 북구, 해운대구, 성남시, 전주시 등 총 28개의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에 제정한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조례를 살펴보면 공유경제 촉진정책 추진, 교육 및 홍보,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센터의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선도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후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 민관 거버넌스「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구성 ·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공유체험행사 등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은 공유허브라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입니다. 사이트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공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서울시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공동체 화폐를 통해 시민들의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인 e-품앗이,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나눔카, 집에 있는 책을 공동책장에 두고 빌려읽는 공유 서가, 생활공구를 대여해주는 공구 도서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빌려주는 주차장 공유 등 그 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카쉐어링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카쉐어링 1대당 승용차 대체효과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6.8대로 조사되었고, 카쉐어링이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동자유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장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기준 카쉐어링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로 절감된 비용은 한 대당 연 477만원으로 당초 지역 외로 유출되던 대당 연 392만원이 지역경제내로 흡수·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수도권은 2016년 말에 카쉐어링 차량수가 일본수준인 인구 만명당 1대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지역경제 흡수효과가 연 1,6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허브는 기업과 시민단체, 공공부문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공유경제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2013년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례제정을 하는 등 공유경제를 기반한 창업과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경제 플레이숍 운영, 공유단체 ·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공유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쳤고, 올해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 · 운영, 공유경제 웹 플랫폼 기능 고도화, 공유단체 · 기업 인증제(통합브랜드) 도입, 시민참여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활동가 양성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분위기 확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도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도해야 합니다. 이는 곧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바로 자원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 차원에서 자원을 활용할 만 한 공유경제활동을 정리해보면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영유아용품 대여시스템 구축, 아나바다 장터개설, 카쉐어링, 자전거 빌려주기, 주차장 공유, 지역인재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단체나 기업을 지원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가 스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개인 대 개인으로 많은 공유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더욱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역할을 양산시가 앞장서서 해나가야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로부터 발생 된 문제가 IT기술과 SNS의 발달로 인해 다시 공유경제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사라진 공동체의식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두레, 품앗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공유문화도 도시화 속에서 어느새 사라져가고 있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공유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야 말로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해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7일

이정애 의원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양산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

는 가운데,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만 박사는 이 지구상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양산시는 연평균 2.6%의 인구 증가율이 지속돼, 지난 11월 20일에는 인구 30만을 달성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닌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만으로 양산시가 인구감소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시도 오래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시민들의 체감 수준이 그리 높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증대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한 좀 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 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시는 매월 평균 약 250여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산모들이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해 오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도움으로 한정돼 극히 제한적인 지원 제도이며 일부에서는 출산율 높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5년도 출산장려 정책 관련 예산은 7억1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7억3천6백만원 보다 오히려 2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지원책인 산후도우미 지원도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는 현 기준에 따르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산후 도우미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지만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 경기, 전남, 성남시 등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예산 18억3천만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고, 국가유공자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물론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까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어 3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2주 154만원, 주당 77만원)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인근 기장군을 비롯한 순창군, 영광군 등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통영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어 출산 후 산모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으로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평가받는 만큼 우리 양산시도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산모 지원과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 시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출생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의 산모 · 신생아 지원 사업이 실제 지원기준 미달로 현실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도시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오직 인력과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 단초가 바로 산모 ·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산모들이 출산 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요즘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신생아들만 이용하는 성역'이 되고 다른 차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문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평등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양산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현실화한다면 3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평등한 혜택을 누리는 또 하나의 선진 정책을 실천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정질문

"무료통근버스 노선확장 필요, 택시업계반발 대책 요구"

제140회 임시회 **차예경** 의원

본 의원은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에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약 9,500만원으로 1년간 시행되며 산업단지의 교통 장애 해소와 최저임금 근로자,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산단 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이 되지 않은 정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공단 근로자의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미 부산광역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9개 공단 23대 무료 통근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그 중 공모사업으로 5대 버스가 녹산 · 화전 지구에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사업은 (사)양산상공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양산시가 버스 노선을 결정짓고 도시철도 양산역을 출발하여 (구)양산시외버스터널을 경유하여 교동, 유산, 어곡 공단과 북정, 산막 산업단지에 각 버스 1대를 운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택시사업노동조합 연맹 양산시지부, 개인택시양산시지부(이하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 철회를 계획하다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당초 계획한 버스 노선 안이 대폭 축소되어 산단 안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의 축소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없어 매일 같이 3, 4명만 태우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무료 통근버스의 노선을 당초 계획했던 (구)양산버스터미널 및 양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택시업계가 반발 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 주요 시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 반응과 일부 이익단체 압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가장 선순위에 놓고 고려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가치 유무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경우 다소 반발이 있을지라도 충분한 명분과 기회 이득을 강조하여 설득해 나가야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수립되고 시민의 고민 해결의 장이 되는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나동연 시장

현재 무료통근버스 노선은 당초계획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노선으로 변경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노선의 무료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시는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차예경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고용노동부 국

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승인은 6월 신청 후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모든 행정절차 이행 시 2015년 무료통근버스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본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근로자, 버스업계, 택시업계, 우리시 등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과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안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통근버스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선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어곡 및 산막산단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양산역에서 출발하는 노선변경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거쳐 배차시간 및 정류소를 확정하고 홍보를 실시한 후 9월 초순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무료통근버스가 운행되면 택시업계에서는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시업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택시업계로서 우려가 되겠지만 사업의 근본취지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60 호선 노선변경으로 인한 교통불편 대책 마련해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차예경** 의원

본 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60호선(기장 ~ 김해 국도)에 대해 교통 불편과 노선 변경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을 출발하여 양산 → 김해 → 호남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기장 → 양산구간은 완공되었고 양산 → 김해구간은 진행 중에 있으나 양산 중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의 설계가 부산국토관리청의 원안에서 변경되면서 양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물류 수송의 원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토목전문가나 운수업 종사자 특히 시민들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와 시내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국가지원지방도로 60호선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민홍철 의원은 양산 시내의 구간이지만 잘못된 설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면 본래 도로 건설의 목적과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산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였고 국토부장관이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국지도 60호선의 현행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당초 국토관리청안 기장군에서 법기터널을 통과하여 경부고속도로 상부로 고가도로 건립 계획이 진행되어왔으나, 양산시의 요구로 경부 고속도로 하부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가 급강하 하게 되고 크랭크화 되어 교통사고 원인 제공은 물론 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40㎞로 낮춰 지면서 교통흐름 장애가 예상됩니다.

둘째, 일반도로와 중복되는 시내 통과 구간 1㎞미만거리에 사거리 교차로 4곳을 접하면서 현재도 출퇴근 만성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도로가 더욱 체증될 것이 예상되어 부산교통방송에서는 양산 시내 전체의 교통체증 유발로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울산-기장-양산-김해로 연결되어 동서를 가로지르는 4차선 고속화국도 물류도로라는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교통 흐름장애를 유발시키며 도로의 본래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최근에는 기존의 굽은 도로를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직선화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신설하는 도로를 곡각화하여 거리를 늘리고 공사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선 변경으로 인해 유산공단 기업체 공장용지 편

입이 일부 공장 용지 편입에서 생산시설 자체가 편입 대상에 포함돼 이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되고 기업 종사자들과 그에 따른 가족 등 수 천 명의 생계까지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원동면은 화제 지역을 동서로 국지도60호선이 가로 지르며 도로 법사면과 방음벽이 합치면 약 8m정도가 성토되어 한 지역이 두 개로 쪼개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개발 요인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개발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설계대로 하천을 따라 김해 상동지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토교마을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계 변경에 의해 마을 뒤로 10여m 높이의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마을이 도로에 갇히게 되어서 약 30호 토교마을은 마을 전체 이주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교통체증과 안전에 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노선변경안의 재조정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나동연 시장

양산시 구간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평면교차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 불편, 도로 곡선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공장편입에 따른 보상 및 마을분리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 구간은 경남도에서 2002년 착공하여 2016년 준공예정으로 14년간 시간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현 공정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을 선정한 사항임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국지도60호선 시가지 연결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기종점에서 유산공단로 까지 국지도 60호선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1일 15,0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럴 경우 동 구간에 대한 교통 서비스 수준이 현재 F등급에서 FFF등급으로 현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제4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지도 60호선(신기~유산) 건설 사업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본 용역에 따라 신기~유산 구간 건설 사업이 통과되면 양산대교 재가설과 국도35호선 지하차도 설치로 교차로 교통체증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신기해강아파트 앞 곡각지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구조령 및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과속 단속카메라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교통안전대책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교통안전문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지도 60호선 2단계 유산~김해 매리 구간은 2007년 11월 설계 시작하여 2015년 10월에 사업비 확정(2,944억원)까지 약 8년의 시간이 소요된 사업으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부득이 유산공단 내 공장이 편입되는 6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는 노선 선정 시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국지도 60호선이 회사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ICEI우방에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2014년 7월 관계기관 대책 회의 시 현장을 방문하여 노선변경 등 어려운 점을 직접 설명 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을 계속 이해 설득 시키고 있으며, 향후, 손실보상협의 시 공장가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공장이전 시 행정을 적극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유산~김해매리 구간 중 원동 화제, 토교마을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용역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 도로 성토 높이를 낮추고 3개(토교, 명언, 화제) 교차로를 설치하여 원동 지역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하게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 재조정 안에 대하여는 국토부 상위계획(매리~양산 노선확정, 2014년 11월), 반대민원, 경부고속국도 횡단, 주변여건(아파트, 구조물 등)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신기IC 최적 노선변경을 확정(2014년 9월)하였으며, 따라서 노선변경을 토대로 기재부 및 국토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고, 노선변경 된 전 노선에 걸쳐 구조물 및 토공작업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2016년말 준공계획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노선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 주민건의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 추진 시 시행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안 및 결의안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7일

발의의원

이종희 의원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확대 건의문

우리 양산시에는 특고압인 76만5천 볼트 45기를 포함한 521기의 송전탑과 약 185KM의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고압이 지나가는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건강, 환경, 등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여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법이 제정됨으로서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8조에 의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상 및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당연히 건강 및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사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지역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 매수 청구지역"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역중 하나인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변전소 주변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사업 제2조 2항 가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아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이고, 76만 5천 볼트 송선 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압은 34만 5천 볼트의 배가되는 69만 볼트보다 7만 볼트가 더 많은 76만 5천 볼트가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거리는 배가 되지 않고 300미터만 더 늘어났습니다. 전압이 배 이상이 되면 거리는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당연히 1,40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 사업에서 지역을 나누는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에게는 50%이내 전기 보조금 명목으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공동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거리에 의해 지원을 하다 보니 같은 아파트나 같은 마을에 살아도 거리가 지원 기준보다 넘으면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와 비대상자간에 서로 반목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일 경우는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우리 양산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거나 변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은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양산시민들도 흉물스럽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송전탑과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건강상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76만 5천 볼트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1,4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일 경우는 포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1	7
2	3
4	8
5	6
9	
10	11

1. 을지연습 격려방문
2. 하북스포츠파크 준공식
3. 어린이 의회
4. 제주도 의정연수
5. 양산고용복지센터 개소식
6. 제 9 회 전국정가경창대회
7.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8. 사과수확 봉사
9. 상북어린이도서관 개관
10. 삽량문화축전 개막식
11. 여성리더대학 특강

의회 청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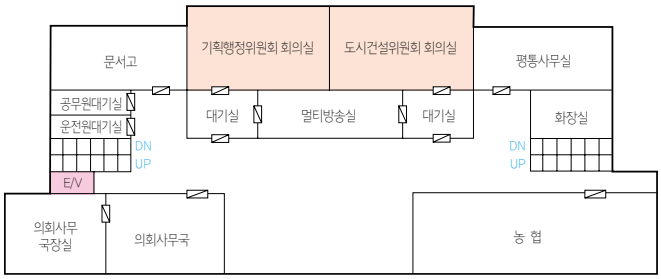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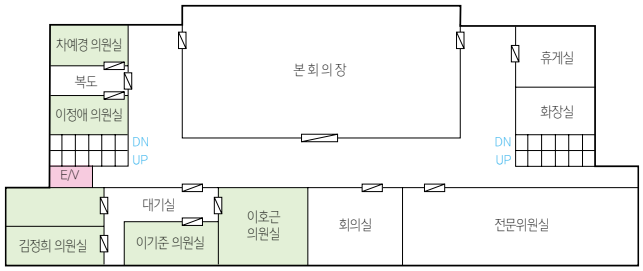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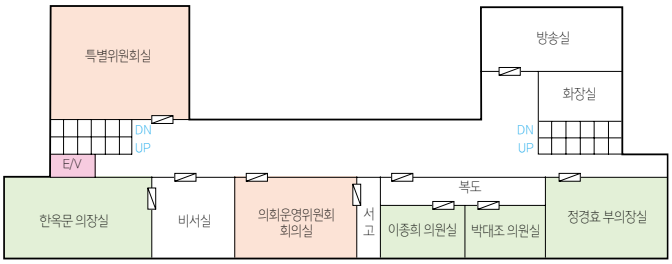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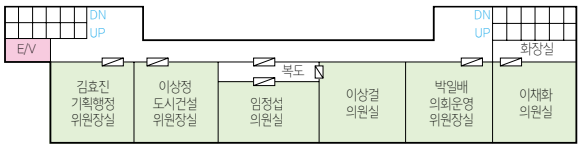

4층

한옥문 의장 392-8500 **의장부속실** 392-8502~5 **정경효 부의장** 392~8510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392-8520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392-8530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392-8540
이채화 의원 392-8563 **임정섭 의원** 392-8547 **이종희 의원** 392-8557 **김정희 의원** 392-8545
이호근 의원 392-8551 **이상걸 의원** 392-8543 **이기준 의원** 392-8553 **박대조 의원** 392-8555 **이정애 의원** 392-8559 **차예경 의원** 392-8561
사무국장 392-8600 **의정담당** 392-8611~5 **의사담당** 392-8621~4 **FAX** 392-86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392-8650,865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392-8660,8662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392-8670,8672 **FAX** 392-8679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합니다

시의회 회의 생방송 시청 안내

양산시의회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에게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www.yscouncil.go.kr

모바일 생중계를 보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live.yscouncil.go.kr/m으로 접속 하시면 됩니다.

소통하는 열린의정 !
역동적인 희망의회 !

양산시의회
YANGSAN CITY COUNCIL
http://www.yscouncil.go.kr
(우) 626-701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TEL. 055)392-8611~4 FAX. 055)392-8619